| 의안번호 | 제 841 호 |
|---|---|
| 의 결<br>연 월 일 | 2025년 월 일<br>(제 회) |

# 충청북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

| 발 의 자 | 박병천 의원 등 7인 |
|---|---|
| 발의연월일 | 2025년 1월 10일 |

# 충청북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

(박병천 의원 대표발의)

| 의 안<br>번 호 | 841 |
|---|---|

발의연월일 : 2025년 1월 10일
발 의 자 : 박병천·이정범·유상용
김성대·김정일·박봉순
박진희 의원

## 1. 제안 이유

2025년부터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정책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 관할 모든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## 2. 주요 내용

가. 조례의 목적(안 제1조)

나. 용의 정의(안 제2조)

다. 교육감의 책무(안 제3조)

라. 지원계획 수립(안 제4조)

마.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치·운영(안 제5조)

바. 교원·학생·학부모 대상 연수 및 교육(안 제6조)

사. 실태조사(안 제7조)

아. 협력체계 구축(안 제8조)

자. 시행규칙(안 제9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붙임

나. 비용추계: 붙임

다. 관계부서 협의: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# 충청북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의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업 및 진로·적성 설계 역량 증진과 그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고교학점제”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48조제3항에 따라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이수를 위하여 운영되는 학점제를 말한다.

제3조(책무) 충청북도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은 고교학점제 운영이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4조(지원계획의 수립) ①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다만, 충청북도교육청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.

1. 고교학점제 운영 기본 방향
2. 고교학점제 운영에 관한 사항
3.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
4. 고교학점제 운영 관련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
5. 고교학점제 운영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제5조(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치·운영) ① 교육감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48조의2에 따라 효율적인 학교별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센터(이하 “고교학점제 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정책 연구·개발
2.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운영 지원

3. 고교학점제 운영 자료 분석 및 제공
4. 고교학점제 운영 관련 교육·연수 자료 개발 및 교육·연수 지원
5. 고교학점제 운영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
6. 그 밖에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③ 제1항에 따른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조직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.

④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고교학점제운영 지원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제6조(교육연수 등) ① 교육감은 교사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운영에 따른 교육과정 관련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연수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에 따른 학생의 과목 선택과 적성에 맞는 진로·학업 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 및 상담, 정보제공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7조(실태조사)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에 관한 만족도 및 개선 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8조(협력체계 구축)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, 대학,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관 계 법 령

## ❒ 초·중등교육법

[시행 2024. 4. 25.] [법률 제19740호, 2023. 10. 24., 일부개정]

**제2조(학교의 종류)** 초·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. <개정 2019. 12. 3.>

1. 초등학교
2. 중학교·고등공민학교
3.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
4. 특수학교
5. 각종학교

[전문개정 2012. 3. 21.]

**제48조(학과 및 학점제 등)** ① 고등학교에 학과를 둘 수 있다.

② 고등학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은 학생이 개인적 필요·적성 및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야 한다.

③ 고등학교(제55조에 따라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를 포함한다)의 교육과정 이수를 위하여 학점제(이하 “고교학점제”라 한다)를 운영할 수 있다. <신설 2021. 9. 24.>

④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은 취득 학점 수 등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한다. <신설 2021. 9. 24.>

⑤ 고교학점제의 운영 및 졸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21. 9. 24.>

[전문개정 2012. 3. 21.]

[제목개정 2021. 9. 24.]

**제48조의2(고교학점제 지원 등)**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정책을 연구·지원하는 법인이나 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교학점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, 위탁 및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1. 9. 24.]

## ❒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

[시행 2024. 10. 8.] [대통령령 제34929호, 2024. 10. 8., 일부개정]

**제92조의4(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)** ① 법 제48조의2 제 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설치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고교학점제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
2. 고교학점제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
3. 고교학점제 관련 연수자료의 연구·개발과 교원 연수의 지원
4. 그 밖에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 및 개선을 위한 지원 업무

② 법 제48조의2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관할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 관련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
2. 관할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
3. 그 밖에 관할 고등학교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 및 개선을 위한 지원 업무

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48조의2 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

제1항에 따른 한국교육과정평가원,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및 한국교육개발원

2. 그 밖에 교육정책의 연구 및 지원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법인이나 기관

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부장관이 설치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고, 교육감이 설치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2. 3. 22.]

# 충청북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
# 조례안 비용추계서

## 1. 사업개요

○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라 학생의 진로·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 지원

## 2. 비용 발생 요인

○ 매년 고등학교 교육과정·고교학점제 운영에 따른 사업비 발생 및 단위학교 운영 지원비 발생

## 3. 관련조문

○ 조례안 제4조1항, 제5조, 제6조

## 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○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

○ 물가상승률은 고려하지 않음

○ 산출내역의 단가는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 및 기준에 따라 하며, 고교학점제 운영비(학교 운영지원비 포함)를 추계함

나. 추계 결과

○ 2025년 고교학점제운영 예산 소요 예정액은 9,487,595천원이며 매년 이에 준는 예산이 지속 필요할 것으로 추계함

다만, 학점제 공간조성 사업은 교육부 사업 여부와 운영 시 도내 학교 선정 결과에 따라 예산 규모는 매년 달라질 수 있음

〈고교학점제 운영 소요예산〉

(단위: 천원)

| 사업명 | 합계 | 2025년 | 2026년 | 2027년 | 2028년 | 2029년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고교학점제 운영 | 47,437,975 | 9,487,595 | 9,487,595 | 9,487,595 | 9,487,595 | 9,487,595 |

다. 추계비용의 상세내역

○ (학교)고교학점제 운영비 지원: 2,146,000천원

○ 충북온라인학교 운영비 지원: 355,963천원

○ 고등학교 교육과정 역량강화: 19,750천원

○ 교육과정 특화학교 운영: 1,670,670천원

- 학교 지원비: 1,666,500천원
- 역량 강화 지원: 4,170천원

○ 고등학교공동교육과정 운영: 677,720천원

- 지도수당 등 운영비: 672,000천원
- 담당자 역량 강화 및 자료개발: 5,720천원

○ 고교학점제지원센터운영: 208,554천원

○ 고교학점제 연수: 6,520천원

○ 고교학점제네트워크: 14,760천원

○ 직업계고학점제 운영: 165,158천원

- 설명회, 자료개발, 지원단 운영 등

○ 학점제학교공간조성 사업: 4,222,500천원

- 공간조성 사업은 교육부 사업 신청·선정을 통해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어 매년 교육부 사업 운영 여부와 선정 결과에 따라 예산 규모가 달라짐

5. 연도별 비용 추계표 <붙임>

# 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| 구 분 | | 1차년도 (2025년) | 2차년도 (2026년) | 3차년도 (2027년) | 4차년도 (2028년) | 5차년도 (2029년) | 계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**세 입** | | | | | | | |
| **세 출** | | 9,487,595 | 9,487,595 | 9,487,595 | 9,487,595 | 9,487,595 | 47,437,975 |
| 고교학점제운영 | | 9,487,595 | 9,487,595 | 9,487,595 | 9,487,595 | 9,487,595 | 47,437,975 |
| **재원 조달** | | 9,487,595 | 9,487,595 | 9,487,595 | 9,487,595 | 9,487,595 | 47,437,975 |
| 의존 재원 | 소 계 | | | | | | |
| | 국고보조금 | | | | | | |
| | 보통교부금 | 6,724,463 | 6,724,463 | 6,724,463 | 6,724,463 | 6,724,463 | 6,724,463 |
| | 특별교부금 | 79,068 | 79,068 | 79,068 | 79,068 | 79,068 | 79,068 |
| | 자체예산 | 2,684,064 | 2,684,064 | 2,684,064 | 2,684,064 | 2,684,064 | 2,684,064 |
| 자체 수입 | 소 계 | | | | | | |
| | 자체수입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
| 지방채 | | | | | | | |
| 기 금 | | | | | | | |
| 기 타 (차입금, 민자, 예비비 등) | | | | | | | |

※ (재원세부내역)특별교부금 및 보통교부금 추계는 매년 변경될 수 있음.